월드종합서비스 약관

제 1 조 (목 적)

이 월드종합서비스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해외에서 거주 또는 거주하게 될 고객에게 제공하는 종합 서비스인 『월드종합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제공자인 국민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이용자인 고객간에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서비스의 이용대상)

서비스의 이용대상은 해외에서 거주 또는 거주하게 될 고객으로서 서비스 이용 약정을 체결한 실명의 개인으로 한다.

제 3 조 (서비스의 종류)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1. 외환 서비스 : 외국통화(여행자수표 포함)의 매매, 외화송금 및 자금이체, 외화예금
- 2. 수시지급 서비스 : 고객의 수시 또는 비정기적인 지시를 받아 처리하는 자금이체
- 3. 기타 부대 서비스 : 여유자금에 대한 운용,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납부 대행 서비스

제 4 조 (서비스의 이용시간)

- ① 서비스 이용은 고객의 거주지에 불구하고 은행의 국내 영업시간으로 한다.
- ② FAX 등에 의한 수시지급서비스는 국내 영업시간 중에 접수되는 경우에는 당일중 처리하고, 당일 국내 영업시간 후에 접수되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처리한다.

제 5 조 (기본계좌)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하여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원화예금 또는 외화예금을 기본계좌로 개설하여야 한다.

제 6 조 (본인확인 및 거래내용 녹음)

- ① 기본계좌에서 출금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은행의 ARS 본인인증시스템을 통하여 본인인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은행은 고객이 직접 ARS 본인인증시스템에 입력한 기본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일치하면 본인으로 간주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③ 은행은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제 7 조 (수시지급서비스 처리방법)

- ① 수시지급은 전화, FAX, 은행 홈페이지내「월드종합서비스 신청」등에 의한 고객의 지시에 따라 기본계좌에서 고객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한다.
- ② 제1항의 수시지급은 고객으로부터 FAX, 은행 홈페이지내「월드종합서비스 신청」등으로 송부 받은

서명 또는 비밀번호, 회원 고유번호 등이 일치하면 처리하기로 한다.

- ③ 전산장애 등을 이유로 당일 중 수시지급 할 수 없을 때에는 회원의 기본계좌로 입금하고 다음 영업일에 처리한다.
- ④ 수시지급서비스의 해외송금 한도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한 범위 내로 한다.

제 8 조 (서비스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 1. 기본계좌의 잔액이 서비스 신청금액과 이용수수료를 합한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 2. ARS 본인 인증 오류 횟수가 연속해서 4회 이상인 경우
- 3. 고객의 요청에 의해 해당 예금계좌에 잔액증명이 발급된 당일의 입출금 업무
- 4. 서명, 인감, 비밀번호가 상이한 경우
- 5.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 등 부득이하게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 한 경우

제 9 조 (이용수수료)

- ①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제반 수수료는 기본계좌에서 자동인출 한다.
- ② 수수료의 요율 및 계산방법은 은행에서 정한 외국환업무 관계 제수수료 지침, 은행이용수수료 업무취급 기준 등을 따르기로 한다.

제 10 조 (거래내역서 송부)

은행은 매분기마다 우편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거래내역서를 통보하기로 하며, 고객이 주소 변경을 미통지한 경우 등 은행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거래내역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서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 1. 고객이 서면으로 통보를 거절한 경우
- 2. 분기동안 고객에 의한 입출금 거래가 없는 경우
- 3. 고객이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경우

제 11 조 (제 신고)

- ① 은행에 신고한 인감, 서명,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고객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 ② 주소, 전화번호 등 경미한 제신고 사항은 FAX, 전화, 은행 홈페이지내「월드종합서비스신청」등으로 변경 할 수 있다.

제 12 조 (서비스 이용의 해지)

- ① 은행은 고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해지한다.
 - 1. 서면으로 해지 신청을 하는 경우
 - 2. 기본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 ② 제 2 조 서비스의 이용대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사전에 회원에게 서면, E-MAIL, 전화 등으로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서비스를 해지 할 수 있다.

제 13 조 (면 책)

- ① ARS본인인증시스템을 통하여 입력된 고객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가 일치하고, FAX 또는 은행홈페이지내「월드종합서비스 신청」등에 의한 수시지급서비스 요청시 기 신고된 인감, 서명과육안으로 대조하여 일치하는 경우, 은행은 이러한 신청에 따른 거래로 고객에게 손해가발생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다. <u>다만, 은행이 고객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u>알았거나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금융거래에 해당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은행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2. 제3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는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경우

제 14 조 (약관의 적용 및 변경)

-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은행거래기본약관 등을 적용한다.
- ②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은행의 홈페이지 또는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해 변경내용을 게시한다.
- ③ 제2항의 변경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전자우편 등 이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전 최소 30일전까지 개별통지하며, 사전에 합의한 방법이 없는 경우 은행에 신고된 전자우편주소로 개별통지한다. 다만, 기존 이용자에게 변경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이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은행은 제3항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이용자가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⑥ 은행은 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 15 조 (관할법원)

이 서비스에 관하여 은행과 고객 사이에 예기치 못한 분쟁이 발생시 최대한 합의점을 찾도록 쌍방간 노력을 다하기로 하며 원만히 해결치 못<mark>하여 양 당사자간에 법률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mark>.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2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